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7.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최○정	1996. 06. 26.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생략)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동 서류를 2021년 6월 10일, 2021년 6월 22일 두 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허홍주(Tel. 031-828-08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